



생명보험의 이해 9: 개인생명보험의 세제

오병국 연구원

- 우리나라는 국민 개개인의 3층 보장 완성을 통한 사회복지국가의 실현과 경제개발에 필요한 산업자금 조달을 위한 저축 유인책으로서의 기능수행을 위해 생명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하고 있음.
- 생명보험상품을 구입한 개인은 계약 가입 및 유지시 또는 보험금 수령시 등 각 단계별로 비과세, 소득 공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.
 - 보장성보험료의 소득공제,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등은 소득세법에 근거하고 있음.
 - 또한, 개인연금보험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받음.
- (보장성보험료의 소득공제)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(일용근로자 제외)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, 해당연도에 납입한 보장성보험료 중 최대 연간 100만 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줌.
 -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음.
 - 계약자: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배우자, 부양가족
 - 피보험자: 근로소득자, 배우자,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
 -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 범위: 만기에 환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음.
 - 대상보험: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
- 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소득공제) 2001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(일용근로자 제외)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최대 연간 100만 원까지 보험료 소득공제를 해줌.

- 다만 장애인전용보험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,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시행함.
 - 이와 다르게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을 각각 가입한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각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.
 -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음.
 - 계약자: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배우자, 부양가족
 - 피보험자: 장애인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
 -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 범위: 만기에 환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음.
 - 대상보험: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표시된 보험
- (개인연금보험 비과세 및 소득공제 등)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, 연금수령액에 대해 비과세 및 연금소득 종합과세가 적용¹⁾됨.
- 개인연금보험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소득공제해주고 연금수령 시 비과세하는 ‘구개인연금(개인연금저축)’과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금액 및 한도를 보다 확대하고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는 ‘신개인연금(연금저축)’으로 분류됨.
- (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) 보험계약에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해당 저축성보험 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²⁾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.
-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나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해지 혹은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함.
 - 이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수입시기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로 하며, 만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함.
 - 보험금 중 피보험자의 사망·상해·질병·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보험차익 과세대상에서 제외함.

1) 자세한 내용은 ‘개인연금의 이해(8): 연금의 세제지원, KIRI Weekly 금융보험해설(2011. 11. 28)’ 참조.
 2) 만기에 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.